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26

발의연월일: 2025. 5. 28.

발 의 자:민형배·김성환·이개호

박지원 · 김문수 · 김동아

소병훈 · 김현정 · 주철현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탁금·과태료·당선무 효자 환수금 등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 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개발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 등으로 정당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해야합니다.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금액(기 탁금 중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금액, 과태료 징수액, 당선무효자 로부터 환수된 기탁금 반환액 및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징수액)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624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를 "「정치자금법」 제30조의2에 따른 정치발전기금(이하 "정치발전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을 "제1항 후단에 따라 정치발전기금에 납입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정치발전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寄託金의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을 "기탁금의 반환 및 납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납부된 금액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발전기금에 납입한다.

제261조제10항 후단 중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를 "공제하고"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정치발전기금"으로하고,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제4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정치발전기금"으로 한다.

① 부과권자는 제10항 후단에 따라 기탁금에서 공제되거나 납부된

금액을 정치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65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 중 제57조에 따른 기탁금 반환액은 정치발전기금에 납입되며, 제122조의2에 따른 선거비용보전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271조제3항 중 "제261조제10항"을 "제261조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치발전기금에의 납입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공제 또는 납부 원인이 발생한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0조제8항 중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0항·제11항"을 "「공 직선거법」 제261조제10항·제12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第57條(寄託金의 반환 등) ① 관 第57條(寄託金의 반환 등) ①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 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 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치자금법 | 제30조의2에 따른 한다. 정치발전기금(이하 "정치발전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 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 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후단에 따라 정치발전기금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 납입되는-----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 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전단에 따라 납

부된 금액은 해당 선거구선거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
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u>국가 또는 해당</u>
<u>지방자치단체</u> 에 납입하여야 한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
 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
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 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
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

- ④ (생 략)
- ⑤寄託金의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지 ① ~ ⑨ (생 략)
 - ①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

관리위원회가 성지발전기금에
납입한다.
③
<u>정치발전기금</u>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탁금의 반환 및 납입 등
<u>기타 필요한 사항</u>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①

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 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 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 • 후보자(예비후보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 연설원 또는 활동 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 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 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 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 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 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納付 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管轄稅務署長에게 委託하 고 管轄稅務署長이 國稅滯納處 分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납 입하여야 한다.

<신 설>

<u>공제하고</u>
정치발전기금
⑪ 부과권자는 제10항 후단에
따라 기탁금에서 공제되거나

①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3. (생략)
-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 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 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생략)

① (생략)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제 비용반환) ① ~ ③ (생 략)

납부된 금액을 성지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u>(12)</u>
,
1. ~ 3. (현행과 같음)
4
정치발전기금
<u> </u>
· 5. (현행과 같음)
① (현행 제12항과 같음)
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 ③ (현행과 같

①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생략)

- 第271條(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 ①・② (생 략)
 - ③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납입·징수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261조제10항을 준용하다.

음)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 중 제5 7조에 따른 기탁금 반환액은 정치발전기금에 납입되며, 제12 2조의2에 따른 선거비용보전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⑤ (현행과 같음)
- 第271條(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 ①・② (현행 과 같음)

3			
	제261조제10항	및	제11항